



## 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일시: '12.4.24(화) 조건  
<인터넷 4.23(월) 12:00 이후>
- ▶ 총 3 쪽

❖ 근로개선정책과 과 장 양 성 필  
사무관 이 창 주  
☎ 02)2110-7399 010-9221-1768  
E-mail: grape@moel.go.kr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### 최저임금 위반하기 있기? 없기?, 없기!!

- 「최저임금 4580 지킴이」 활동을 통해 위반사례 집중 적발
- 최저임금 미만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('10년 11.5% → '11년 10.8%)

□ 고용노동부는 취약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「최저임금 4580 지킴이」로 위촉하여,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발하고, 최저임금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을 실시한다.

\*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학생, 주부 등 일반 시민 100명을 선발하여 6주간(4.23~6.1) 활동

○ 지난해부터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지킴이를 선발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활동을 하였으며, 올해는 작년보다 운영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주 동안 시행한다.

○ 지난해 지킴이들은 2,483개소의 최저임금 위반(의심)사례를 적발하였으며, 이 중 2,052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8,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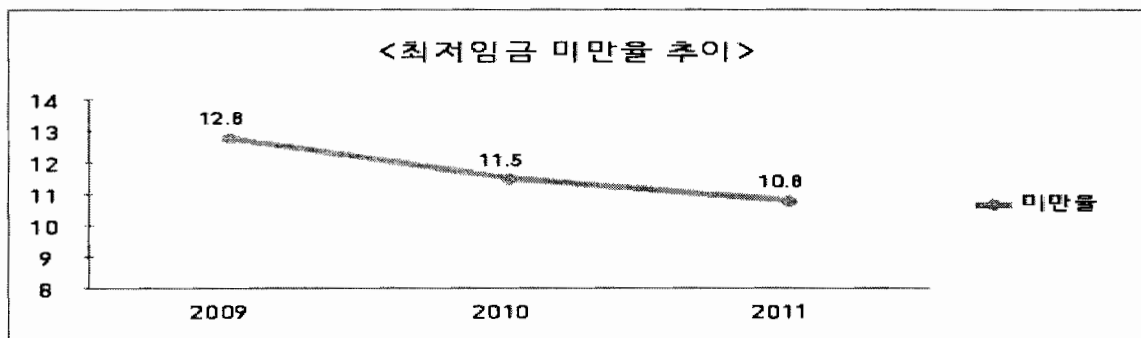
\* 시정조치 8,345건, 사법처리 3건

□ 매년 사업장 지도·감독\*, 「최저임금 지킴이」 사업 운영, 최저임금 준수관련 홍보 등의 결과 미흡하지만 **최저임금 미만율\*\***이 감소하는 있는 추세이며,

○ 작년에 비해 「최저임금 4580 지킴이」 활동의 **운영기간을 2배로 확대**하여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유도하고, 미만율을 더욱 감소시켜 나갈 예정이다.

\* '11년 23,760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2,077건의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여 시정조치(2,066건) 및 사법 처리(11건)

\*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  
(’09년 12.8%→’10년 11.5%→’12년 10.8%)



□ 금번 지킴이 사업은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하고 있는 편의점, PC방, 주유소를 타겟업종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

○ 업종별 단체\*에게도 「최저임금 4580 지킴이」 사업 운영 안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는 분위기를 유도할 예정이다.

\* (사)한국편의점협회, (사)한국인터넷PC문화협회, (사)한국주유소협회

□ 「최저임금 4580 지킴이」 들이 친구, 가족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의 정보수집,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피해 근로자와의 면담, 구인 광고에 대한 온·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의 방법으로 **최저임금 위반(의심) 사례를 발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면**

-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위반(의심) 사업장에 대하여 즉시 감독을 실시하며
  - 이 때 범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을 하도록 하고,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처리하게 된다.
- 또한 지킴이들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홍보물(전단지, 포스트잇, 리플렛 등)을 배포하고
  -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출입문 등 눈에 띄는 곳에 최저임금 준수사업장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.
-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“이번 「최저임금 4580 지킴이」 활동은 특정업종에서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뿌리 뽑아 취약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.” 고 하면서,
  - “이번 활동으로 관련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·확산시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·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고 밝혔다.
-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(☎: 국번없이 1350)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,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「cyber 신고 센터」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(근로개선지도과)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이창주사무관(☎ 02-2110-739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